

주주총회 안건 및 소수주주 주주제안 관련 설명자료

I. 정기배당 관련 주주제안에 대한 당사의 입장

1. FY22 정기배당 결정의 취지 및 주주환원 실적

2. 주주제안 배당에 대한 검토

- (1) 투자수요 및 유보자금 필요
- (2) 업종 특성에 따른 현금 유동성 확보 필요
- (3) 대외 환경 변화에 대비한 현금 유보 필요
- (4) 배당 및 주주환원 수준의 안정적 유지 및 성장 필요
- (5) 대주주 지분 매매 거래 관련

II.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에 대한 당사의 입장

1. 당사 경영수수료 계약 관련

- (1) 경영수수료 계약의 경영상 필요성
- (2) 계약 조건의 적정성
- (3) 변경 계약 체결 과정 절차적 정당성

2.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의 적정성

- (1) 당사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선정 절차
- (2) 당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 구성안
- (3) 주주제안 후보자에 대한 당사 의견

당사는 주주제안 주주를 포함한 당사 주주들의 당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항상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언제나 주주들의 의견 제시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성실한 주주 Communication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1년 9월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신세계(이하 “신세계”)의 정용진 부회장 보유 지분 거래 후 당해 12월 당사 주식 1%를 보유하고 있는 김남훈 주주가 ① 대주주 지분매수 가격과 동일 가격의 공개매수 실시, ② 배당성향 50% 이상 확보, ③ 자사주 30만주 취득 후 소각을 요구하는 주주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와 같은 김남훈 주주의 요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충분히 소통하고 주주 의견을 회사 경영상 가능한 한도에서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 우선 대주주 지분매수가격과 동일 가격의 공개매수는 회사 담당자와 3차례에 걸친 미팅을 통해 대주주 지분 매수 거래의 필요성 혹은 추가 공개매수의 필요성 등은 모두 모회사인 신세계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당사가 알고 있거나 관여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는 점을 설명 드린 바 있음.
- 배당성향 50% 이상 요청에 대하여는 당사가 21년 10월 5일 공시한 배당정책(1차년도 당기순이익×20% 이상)보다 5.8% 상향하여 22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당 8,500원(주식 액면분할 전 기준, 배당성향 25.8%)로 배당성향을 확대하여 배당을 추진함.
- 자사주 30만주(1:5 분할전) 취득 후 소각요구와 관련하여 당시 대주주 보유지분을 제외한 당사 유통주식 물량이 59만주에 불과하여 30만주를 자사주로 취득하여 소각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음. 이를 대신하여 유통주식 수를 확대하여 주식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22년 2월 22일 액면분할(1:5 분할) 추진을 결정 및 공시하였으며 22년 3월 23일 개최 정기주주총회에서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변경 승인을 통해 액면분할을 진행한 바 있음.
- 또한 이미 공시한 바와 같이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42,810주 전량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소각할 예정임. 위 주식은 19년 1월 실시한 영업양도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이어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한 감자 절차에 의해서 소각이 가능함.

이후 22년 2월 및 23년 1월에는 김남훈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에 대하여 당사는 주주권 존중 차원에서 회신 공문과 함께 주주명부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2년 11월 김남훈 주주는 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본건 주주제안 서신을 송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사는 22년 12월 김남훈 주주와의 대면 미팅을 통해 주주님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였습니다.

본 설명자료의 작성도 주주의 문제제기 및 제안에 대한 당사의 검토 결과 및 입장을 설명하고, 전체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당사 기업가치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당사의 주주들과의 건설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당사 기업가치 및 전체 주주 이익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I. 정기배당 관련 주주제안에 대한 당사의 입장

1. FY22 정기배당 결정의 취지 및 주주환원 실적

당사 23년 정기배당 결정 및 주주환원 실적에 대한 설명 및 정기배당 결정의 근거가 된 당사 영업 및 재무 상황, 당사의 향후 예상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설명은 당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23년 2월 15일자 안내 공시 및 당사 홈페이지 링크에 게재한 당사 배당 적정성에 대한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jshinsegae.co.kr/theme/new2/html/company3/04.php>

당사는 본건 주주의 배당성향 확대 요구를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히 수용하여 배당성향 30%에 달하며, 동종업계에 대비로도 상당히 우수하며, 당사의 기존 배당 정책 공시도 충실하게 준수하는 배당안을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2. 주주제안 배당에 대한 검토

주주제안 주주는 당사의 배당을 주당 3,750 원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당 제안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당사 기업가치 및 전체 주주 이익 증대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투자수요 및 유보자금 필요

당사는 현재 광주 Art & Culture Park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시장과도 소통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기준 8/17(수) 오후 12시부터 활용 부탁드립니다. News Release 보도자료

신세계, 광주에 스타필드·백화점 개발 동시 추진

- 신세계프라퍼티, 호남권 최초 스타필드 출점 위한 후보지로 어등산관광단지 검토
- 쇼핑·문화레저·엔터에 휴양까지 한 곳서 즐기는 체류형 정통복합쇼핑몰 개발 계획
- 신세계百貨, 광주신세계를 '지역1번점' 넘어 '국내 최고의 랜드마크 백화점'으로 개발
- 세계 최정상급 강남점 수준 '고품격' 업그레이드, 광주·호남 지역 최초 에루샤 입점
- 스타필드·백화점 동시 개발 시너지 내며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할 것 기대

[이하 생략]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향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현금흐름 창출 규모(과거 3년 평균 약 680억 원)를 고려할 때 위 투자를 위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시장 경색에 따라 조달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신세계 신용등급(AA) 기준 3년 만기 회사채 금리는 2023년 2월 6일 기준 4.09%로 크게 상승한 상태이며, 향후에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이러한 자본시장 불확실성 및 높은 금융 비용 고려 시 현재의 배당정책에 따른 주주환원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체 유보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나은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채 금리 추이]

| % | 2020.12.31 | 2021.12.31 | 2022.12.31 | 2023.01.30 | 2023.02.06 |
|---------|------------|------------|------------|------------|------------|
| AA(3년물) | 1.3 | 2.38 | 5.16 | 4.18 | 4.09 |

(출처: Nice 신용평가)

만약 주주제안 주주의 요구대로 주당 3,750 원을 배당할 경우 배당 관련 매년 약 300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 보유 현금 규모, 향후 CAPEX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현금흐름 부족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배당성향을 30% 수준으로 상승시키면서도 회사의 투자 여력을 유지하는 현재의 배당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 업종 특성에 따른 현금 유동성 확보 필요

당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규모 투자 부담 및 자본시장 등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바, 투자 이후 본격적인 현금흐름 창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급하게 배당 규모를 확대할 경우 당사의 유동성 악화가 우려되며, 배당 규모 확대 후 부득이하게 다시 감소시키게 될 경우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 및 유통업체 특성상 매출 및 현금흐름 변동 위험, 매입채무 등 영업부채 상환 자원 확보 등을 위해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타격으로 인해 현금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3) 대외 환경 변화에 대비한 현금 유보 필요

당사를 비롯한 유통업계는 전세계적인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 실적 악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자금조달시장의 경색과 대외환경 변동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및 유동성 확보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풍부한 유동성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영업 및 투자자금 확보, 자금조달 비용의 절감, 점진적인 주주환원 규모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기업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배당 및 주주환원 수준의 안정적 유지 및 성장 필요

기존 자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당은 하나의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배당 증가를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신호로, 배당 감소를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기존과 다른 특별한 수익성 개선 요인이 없음에도 주주제안 주주 주장대로 배당성향을 21년 대비 약 2배로 증가시킨 후 수익성 저하 및 현금흐름 악화에 따라 배당금이 다시 감소하게 될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전달하여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장기적인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기업가치 상승, 미래 CAPEX 규모, 불확실한 경영환경 대응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배당성향 확대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5) 대주주 지분 매매 거래 관련

주주제안 주주는 21년 9월 14일 당사 대주주였던 정용진 부회장이 당사 지분을 현재 최대주주인 신세계에 매각한 거래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이루어진 거래여서 당사 주가가 하락하는 등 회사 소액주주가 손해를 보았고 이에 따라서 당사의 배당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관련하여 위 거래 공시시점을 전후한 당사 주가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분취득공시 9/15일 장종료후

[대주주 지분매수 거래 전후 당사 주가 추이]

| 구 분 | 광주신세계 | KOSPI 지수 | 유통업지수 |
|---|-----------------------|--------------------|------------------|
| · 거래 전 3개월 평균 주가 (21.6/16~9/15) | 39,437 원 | 3,220 | 430 |
| · 거래 후 3개월 평균 주가 (21.9/16~12/15) (대주주 지분 인수 공시 전 대비 변동률) | 37,233 원 (- 5.6%) | 2,995 (- 7.0%) | 390 (- 9.3%) |
| · 전년말 주가 (22.12/29) (대주주 지분 인수 공시 전 대비 변동률) | 32,000 원 (- 18.9%) | 2,236 (- 30.5%) | 334 (- 22.4%) |

실제로 당사 3개월 평균 주가는 대주주 지분 취득 공시 이후 약 5.6% 하락하였으나, 전체 KOSPI 시장은 약 7.0%, 유통업은 약 9.3%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시장지수 대비 오히려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당사의 주가가 대주주지분 취득으로 인해 폭락하였다고 하는 것은 전체 시장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주가는 시장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한가지 사실만으로 주가 등락의 원인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전년말 기준으로 주가는 공시 전 대비 약 18.9% 하락하였으나, KOSPI 시장이 동기간에 약 30% 가까이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당사의 주가는 계속해서 시장 대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대주주 지분 거래는 당사의 주주 간의 거래여서 그 정확한 경위 및 거래 조건에 대해서는 당사가 공시한 내용 외에는 명확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의 경우에도 상장회사 경영권 지분 매매 등의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적절한 가치로 매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 법원의 판례이고, 아래 한국 법인세법 등에서도 이러한 대주주 지분 매매에 있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적정 가액 산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과세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 받은 소득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중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개정 2007.2.28, 2009.2.4, 2012.2.2, 2021.2.1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그러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대주주 간에 지분 매매를 한 것이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보기도 힘들고, 더구나 위 거래는 당사 주주 간의 거래여서 이로 인하여 당사의 영업이나 재무 상황, 기업가치에 어떠한 변화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당사가 관여하거나 결정하기 어려운 당사 주주 간의 주식 매매거래에 대해서 당사의 최대주주가 신세계로 변동하면서 신세계와 당사 간의 사업협력 및 시너지 확보 등이 더욱 용이해지고, 최대주주의 당사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및 영업 확장 등 가능성도 증대되어서 당사 기업가치 및 주주 전체 이익 증대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II.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관련 주주제안에 대한 당사의 입장

1. 당사 경영수수료 계약 관련

당사는 신세계와 경영제휴계약을 맺고 있으며 동 계약을 통해 통상적인 경영자문 용역 외에 당사 점포에서 신세계 백화점의 브랜드, 마크 등 지식재산권을 포괄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 받고 있으며, 매출액의 1.3%를 경영제휴수수료로 포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¹⁾ 지난 21년 1월 1일 경영수수료 계약을 연장(21년 1/1 ~ 25년 12/31) 하면서 총매출액의 2.0%를 경영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²⁾

주주제안 주주는 위 당사 본건 경영수수료 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되어서 당사에 손해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본건 임원 선임 주주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본건 경영수수료 계약은 그 경영상 필요성 및 거래 조건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법률적인 절차 등을 모두 준수하여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어서 주주제안 주주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 드립니다.

¹⁾ ㈜광주신세계 2021. 5. 31. 공시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

²⁾ ㈜광주신세계 2021. 5. 14. 공시 분기보고서

(1) 경영수수료 계약의 경영상 필요성

본건 경영제휴계약을 통하여, 신세계는 당사에게 위 지식재산권 사용권 부여를 하고, 경영정책 및 관리 관련 사항, 영업에 관련된 정책, 잡화부문, 의류 부문, 주방용품 및 패션 부문, 가전생활용품부문, 기획개발상품 등의 상품 구매대행, 백화점 브랜드 사용과 관련한 경영자문 및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을 위하여 현재 백화점 브랜드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당사의 경영정책 및 관리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조직과 인력 확충을 통해서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는 것 보다는 신세계의 공동인력을 통한 경영자문용역 형태로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성 차원에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당사 경영수수료 계약 조건의 적정성

신세계 백화점 그룹 차원에서 경영관리 기능 전문화, 점포 조직 효율성 강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신세계의 경영자문업무(경영정책, 영업정책, 상품기획 및 구매대행, 백화점 브랜드 사용)가 확대되고 투입되는 인력 및 비용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가 증가분을 반영하여 적정 수수료율을 재산정하였습니다.

경영수수료 계약 조건은 독립적인 평가기관의 외부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 수수료율을 평가하여 적용하였으며, 이때 적정 수수료율은 신세계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투입 원가에 적정 마진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되, 그 수준이 유사 사례들의 수수료율 범위 내에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타사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2021년 6월 신세계백화점 천안아산점에 대하여 (주)신세계와 신세계 계열회사가 아닌 (주)아라리오 간 체결한 경영수수료계약과도 조건(매출의 2.0%)이 유사하며, (주)이마트의 안양점, 시화점, 부천점의 계약수준과도 유사한 수준이므로 당사 계약 조건은 적정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신세계와 계열관계 내지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주)아라리오와도 유사한 내용의 경영자문 및 용역 제공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고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의 경영수수료 계약 조건이 (주)아라리오의 조건과 달라지게 되면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 등 추가적인 세무,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3) 당사 경영수수료 계약 변경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당사는 2020. 12.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세계 본사와의 경영수수료 계약 변경에 관하여 논의하고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당시 이사회는 신세계로부터 제공받는 관련 용역이 당사의 경영상 반드시 필요하고, 경영수수료 조건에 대해서도 점차 관련 서비스의 전문화로 본사의 공통인력이 증가하여 공통비용이 증가한 점, 이마트 등 그룹 내 유사계약의 수수료가 통상 약 2.0% 인 점,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해서 독립적인 평가를 받은 점 등 경영수수료 조건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본건 변경 계약을 승인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의 적정성

(1) 당사의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선정 절차

당사는 상법 제 542 조의 8 및 상법 시행령 제 34 조에 의해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강제되는 대규모 상장회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의 독립성 및 전문성 등에 대한 충실한 자격 검증 및 엄격한 추천절차 진행을 위해서 당 정관 제 36 조의 2 및 이사회 규정 제 14 조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2 명, 사내이사 1 명으로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후보자 추천에서 있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재무, 글로벌, ESG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전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수한 사외이사 후보를 사전에 관리·검증하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우수한 이사 후보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당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의 구성안

본건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통해서 당사 이사회가 당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로서 추천한 한동연, 이건리, 이상호 후보자는 아래와 같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분들로서 당사 경영 및 주주 가치 제고에 큰 기여를 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동연 후보자는 원광대학교 경제학 학사, 부다페스트 경제대학교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국세청 과장, 중부청 성실납세국장,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하였고 2021년 3월부터 광주신세계 사외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위 후보자는 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하였고, 감사, 재무, 세무에 대한 전문성이 누구보다 훌륭하다는 점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의 감사위원장으로서는 외부감사인을 감독하고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등 당사의 중요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이건리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연세대학교 법학 석사 취득, 한양대 법학 박사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국민권위원회 부위원장직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위 후보자는 오랜 검사 경력을 바탕으로 한 법률 전문가이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직을 거치면서 국정운영 및 정책기획에 있어서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후보자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시각으로 회사 경영을 감독하고, 준법통제 및 내부통제 확립에 기여하며, 이사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후보자는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KAIST 경영과학 석사 및 산업경영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국정과제 평가지원단,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자문교수, 산업자원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위 후보자는 ESG 전문가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풍부한 연구경험도 있습니다. 위 후보자는 ESG 및 기업 경영 전문가로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3인의 후보자 중 한동연 후보자는 재무회계 및 세무 전문가이고, 이건리 후보자는 법률 및 준법통제 전문가이며, 이상호 후보자는 경영관리와 ESG 전문가여서 당사 경영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의 전문성을 균형 있게 갖춘 후보자들로 당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주주제안 후보자에 대한 당사 의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엄정하게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건 제안 주주를 포함하여 당사 주주라면 누구든 사외이사 예비 후보를 추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위와 같은 충분한 검증 절차를 통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 가능합니다.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배일성 후보자는 위와 같은 충실한 후보자 검증 및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사가 위 후보자가 당사 경영 및 기업가치제고에 필요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가 어려워 우려가 됩니다. 또한 주주제안 주주는 원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로 다른 변호사 후보자를 제안하였다가 1개월 만에 위 회계사인 배일성 후보자로 변경을 한 것이어서 주주제안 주주 입장에서도 충분하고 신중한 고려가 있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반면 당사 한동연 후보자는 지난 2년간 감사위원장으로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감사위원으로서의 경험을 쌓은 점, 그리고 국세청에서 세무, 재무, 감사 등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유통업에 필요한 폭넓은 안목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당사의 사외이사로서 적합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전략에 부합하고 미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전문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재무회계, 법률 및 경영, ESG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균형 있게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이사들은 정부 혹은 학계에서 오랜 기간 명망 있는 전문가로 활동하는 등 경력 및 전문성이 충분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현재 후보자 구성의 전문성과 균형 있는 구성에 비추어, 본건 주주제안과 같이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제한된 경력이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 * * * *